

◎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48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‘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(MRCP공법)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8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(주)삼우아이엠씨(김기현)		
	주 소	우11960 경기도 구리시 별말로70번길 70(토평동)		
	전화번호	02-2122-2795	팩스번호	02-2122-6830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43호
- 명 칭 :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(MRCP공법)
- 기술분야 : 토목 / 도로 /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
- 신기술의 내용

이 신기술은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설계단면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이다.(MRCP: Mechanical-placement Reinforced Concrete Pavement)

○ 신기술의 범위

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2014.8.26. ~ 2026.8.25.(12년)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.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